



교직원연수심의위원회 운영지침

규정번호	5-0-22		
제정일자	2013. 10. 01		
개정일자			
개정번호	Ver. 0	총페이지	2

제정 2013년 10월 1일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교직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한 교직원연수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과 임기) ①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행정처장과 부처장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기획처장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6조(위원의 제척) ①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제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7조(보고 및 시행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8조(기타) 위원회 운영 지침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
제9조(지침의 제정 및 개정) 지침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- (1) **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**(경과조치)**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